

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2018-712호

이 조례(안)은 확정된 입법안이 아니므로
조례·규칙심의회, 규제개혁 위원회 및
구의회 심의 결과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
수 있습니다.

서울특별시 중구 공용·공공용의 청사시설 부지 매입 기금 설치 및 운용
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
의견을 구하고자 「서울특별시 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」 제6조에
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.

2018년 10월 17 일

서울특별시 중구청장



서울특별시 중구 공용·공공용의 청사시설 부지 매입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

1. 개정이유

- 기금재원에 구유재산 매각수입금을 신설토록 「서울특별시 중구 공용·공공용의 청사시설 부지 매입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」를 일부 개정하여, 향후 구유재산의 감소방지 및 대체재산의 안정적 공급토대를 마련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- 기금 재원에 구유재산 매각수입금 신설

3. 의견제출

○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18년 11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(참조 : 재무과장, 주소 : 서울특별시 중구 창경궁로 17(예관동, 서울 중구청), 문의전화 : 3396-5012, FAX: 3396-8670, 전자우편 : gigusarang@junggu.seoul.kr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(찬·반 여부 및 그 사유)
- 성명(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
첨부 1. 서울특별시 중구 공용·공공용의 청사시설 부지 매입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.
2. 신·구조문 대비표 1부. 끝.

서울특별시 중구 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 중구 공용·공공용의 청사시설 부지 매입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중구 공용·공공용의 청사시설 부지 매입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
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 제2호를 제3호로 하고, 같은 조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2. 구유재산 매각 수입금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 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3조(기금의 재원) (생략)	제3조(기금의 재원) (현행과 같음)
1. (생략)	1. (현행과 같음)
<u>2. 그 밖의 수입금</u>	<u>2. 구유재산 매각 수입금</u>
	<u>3. 그 밖의 수입금</u>